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282
----------	---------

제출연월일 : 2001. 1.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 2000.11.25일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우리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감면조례 목적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안 제1조)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단서조항을 간결 명확히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안 제2조 및 제4조)
3.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는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수익사업을 정하지 않음으로 삭제함(안 제3조)
4.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안 제8조)
5.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함(안 제11조)
6.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

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대상을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함(안 제12조 제2호 및 제3호)

7.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8.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안 제18조제2항)

9.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15조)

10.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의2)

1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함(안 제17조)

12.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제4장(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6장(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으로 이동함(안 제18조의2)

13.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중 민간출자분 사업소세 과세전환으로 조문을 정리함(안 제19조)

14.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안 제20조)

15.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16.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용된 한시적 조항인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을 삭제함(안 제22조)

조의2)

17.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중 조문을 정리함(안 제22조의3)

18. 벤처기업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22조의4)

19. 비영리 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함(안 제22조의5)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두천시 시세의”로한다.

제2조제2항중 “배우자 또는”를 “배우자,”로,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배우자 또는”를 “배우자,”로,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

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장의 제목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본문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시설”를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제11조본문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본문중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이상”으로,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85제곱미터”를 각각 “60제곱미터”로한다.

제13조제1항내지 제3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각각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5조의2중 “1,000분의3”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으로 한다.

제17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9조중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그 민간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0조중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로 한다.

제22조중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3중 “동두천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으로 하고, “취득”을 “보유”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두천시 시세의-----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②----- ----- ----- ----- -----배우자,----- ----- ----- ----- ----- -----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4(생략)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다.)

2~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배우자,-----

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4(생략)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4(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
교육시설

2~3(생략)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영리 사회교육시설

5~7(생략)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2(생략)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
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

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3 (현행과 같음)

4. 평생교육-----

----- 평생교육시설

5~7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2(현행과 같음)

<작 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

3. -----60제곱미터-----

-----.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

②-----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

-----.

<삭 제>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농업소득
세-----

-----.

제15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

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세 감면)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

<신 설>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
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
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

**제18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
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
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
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치및기금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
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
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
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
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

-----그 민간출
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
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
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삭 제>

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동두천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2(생략)

<신 설>

<신 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보유-----

-----.

1~2(현행과 같음)

제22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2조의5(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